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4 선고 2020가단5187192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고1. B 주식회사

2. 주식회사 C

3. D

4. E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1. 4.

주 문

1. 피고 B 주식회사, 주식회사 C,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6. 3.부터 2020. 7. 2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2020. 8. 27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2020. 4. 3.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E은 피고 D에게 2020. 4. 3.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접수 제9271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이백규

별지